

1. 기본교육의 통합 및 최초교육 이수시간 변경

1) 기본교육

구분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개정전	이수시기	최초로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이수시간	35시간 이상	70시간 이상	35시간 이상
개정후	이수시기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		
	이수시간	통합 35시간 이상		

2) 최초교육

구분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개정전	이수시간	35시간 이상	초/중급 : 35시간 이상	35시간 이상
			고/특급 : 70시간 이상	
개정후	이수시간	35시간 이상	초/중급 : 70시간 이상	35시간 이상
			고/특급 : 105시간 이상	

2. 계속교육 이수시기 변경

구분	개정전	개정후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3. 전문교육의 상호 면제 조항 변경

개정전	개정후
품질관리기술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또는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설계시공기술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또는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삭제